

예 산 총 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520,544,623	15,616,339
일반회계		502,540,605	15,076,218
특별회계		18,004,018	540,121
	기타특별회계	18,004,018	540,121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5,200	156
	의료급여기금	427,955	12,839
	공공실버주택	319,482	9,584
	주차장	17,251,381	517,54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200,000천원(일반 1,000,000, 재해·재난목적 200,000)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"18,800,000천원"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